

2019년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Q&A

Q : 신고제 접수날짜는 언제까지이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신고제는 상시접수이나,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청을 하실 예정이시면 시간관계상 12월 2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 신고제와 관련 서류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A : 서울시 민원실이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2133-411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서울형 대안교육 기관 선정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A : 2월중에 선정 진행 예정입니다.

Q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협동조합 포함),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한 개의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개의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해도 무방합니까?

A : 한 법인이 여러 개의 기관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지만 기관마다 각각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 어떤 법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대안교육기관 신고의 경우 법인의 정관 안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이 청소년 관련 사업 등 다소 포괄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있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청의 경우 법인의 정관 안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에 “대안교육”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서류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접수해야 합니까?

A : 서류제출은 메일로 담당자에 문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담당자가 서울시청 민원실로 접수를 대행합니다. 다만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수하시는 경우 서울시청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 : 그럴 경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 등본 사본을,

Q :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 운영을 하는 기관의 경우는,

A : 건물소유자나 건물사용자의 승낙서를

Q : 공공기관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는,

A : 공공기관장 명의의 건물사용 승낙서를,

Q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는

A : 각각의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 임대료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 때 대안교육기관 신고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사업비를 명목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건물에 기관이 여러 개 인 경우 각각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층은 법인 3층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 대안교육기관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각종서식 중 <서식 2>는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수정을 하지 말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혁이나 조직도의 경우에는 칸이 부족할 수 있어 별도로 첨부 가능하나 되도록 표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관의 사진의 경우 외부전경, 명칭, 기관내부, 교실 3~4장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운영실적은 양식의 항목은 변경하지 말고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수정요청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2020년에 있을 사업계획서에 예정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업개요에서 목표, 대상, 장소, 모집방법, 홍보방안에 대해 작성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작

성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상 지출금액 중 보조금은 괄호 안에 서울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거점공간의 경우 시간표 대신 월,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꼭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 신고필증의 발급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A : 대안교육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방문 후 요건 충족 시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Q : 운영 법인이나 단체의 주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위치해야 하나요?

A : 법인이나 단체가 서울시 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안에 있으면, 조례자체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서울 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Q : 기존에는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시립 또는 구립 시설의 이름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 신고제와 관련 그것이 계속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의 이름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A : 운영주체는 법인으로 해주시고, 시립 또는 구립 시설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신고제 이후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회나 공청회 계획은 있으신가요?

A :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필히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고제는 절차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이후에 따로 따로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 대안교육기관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 조례 확인방법은, 시의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 향후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A : 일단 2020년도에 15개 내외 정도로 지정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늘어나갈

계획으로, 지원규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에 연동을 해서 지원금에 차등을 두어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지원에 관한 설명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신청서식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A :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고시·공고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고문과 각종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02614?tr_code=snews

서울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